

### 보도참고자료



보도시점

배포시

배포

2024.9.11.(수) 10:00

#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

- 「은행업감독규정」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-
- ▲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저자본 규제비율 상향 → 미충족시 배당, 상여금 등 제한

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(이하 "금융당국")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「은행업감독규정」 및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과 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」 및 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」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('24.9.11.~9.21.)하였습니다.

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해 「은행권 경영·영업관행·제도개선 TF」 논의를 거쳐 "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\*"을 발표('23.3.16일)하고,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.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.

- \* 4소트레스완충자본 도입
  - ❷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→ '23.5월 1% 부과 결정, '24.5월부터 시행중
  - ❸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→ '23.11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
  - ♠예상손실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→ '23.11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

국제기준인 바젤 필라2 제도 원칙에 따르면, <sup>원칙1</sup>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체계(ICAAP)를 구축·운영해야 하며, <sup>원칙2</sup>금융감독당국은 해당 평가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·평가해야 합니다. 금융감독당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<sup>원칙3</sup>추가자본 적립이나 <sup>원칙4</sup>사전 예방적 감독조치(이익배당 제한 등)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미국·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은행·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(스트레스테스트)을 포함한 **자본 적정성 평가** 등을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**추가자본 적립 요구 등**의 **감독조치**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※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은 국가별로 상이(예시) (미국)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직접 부과(유럽) 위기상황분석을 포함한 필라2 평가 등급에 따라 추가자본 부과

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(ICAAP)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\*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\* 금융당국은 리스크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 등의 조치

그러나,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·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
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그간 금융당국은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**은행권**과 TF를 구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. 위기상황분석 모형 정교화를 거쳐 시범운영을 실시('23.9~12월)함으로써 추가자본 부과수준 등에 대한 은행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,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.

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<sup>●</sup>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, <sup>②</sup>최대 2.5%p까지, <sup>③</sup>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\*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.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,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\* 보통주규제비율 : ①4.5% + ②자본보전완충자본 2.5% + ③경기대응완충자본(現 1%) + ④금융체계상 중요 은행·은행지주(D-SIB) 선정시 1% + ⑤스트레스완충자본(SCB) → (D-SIB) 9%+SCB, (기타) 8%+SCB

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입니다. 독자적인 자본 확충이 어렵고,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 아울러,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(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은행지주회사 포함)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.

「은행업감독규정」등 개정안은 '24.9.11.부터 9.21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,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

### 〈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〉

- 예고기간 : 2024.9.11.(수) ~ 2024.9.21.(토), (10일)
- 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  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)
 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### [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]

- 일반우편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
- 전자우편 : guardkim@korea.kr 팩스 : 02-2100-2948
- ※ <u>개정안 전문(全文)</u>은 "금융위 홈페이지(www.fsc.go.kr) › 정책마당 › 법령 정보 › 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## [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]

- 일반우편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
- 전자우편: bankrisk@fss.or.kr 팩스: 02-3145-8057
- ※ <u>개정안 전문(全文)</u>은 "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› 업무자료 › 금융 감독법규정보 › 세칙 제·개정 예고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호 (02-2100-2953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우현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명기영 (02-3145-8060)



다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